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

2015. 2.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차액계약 산정원칙	
제1절 계약전력량 산정원칙	3
제2절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 산정원칙	4
제3절 기준가격 산정원칙	5
제4절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원칙	5
제5절 연료비 기준가격 산정원칙	6
제3장 부생가스발전기의 차액계약	8
제4장 보 칙	11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

2015. 2. 제정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1.1 이 규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시장규칙”이라 한다) 제13.1.1조에 의거하여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정부승인차액계약의 당사자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Guide Line)으로써 정부승인차액계약 당사자는 아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계약전력량 산정기준
2.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 산정기준
3. 기준가격 산정기준
4.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기준
5. 연료비 기준가격 산정기준
6. 차액정산금, 발전기 수입 및 배출권거래비용 산정기준 등

1.3 계약당사자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차액계약고시”라 한다)에서 지정된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1.4 보안유지 의무

차액계약 관련 업무 수행자,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5 차액계약 기간

- 1.5.1 차액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성, 차액계약 기준가격의 타당성, 연료비 및 전기요금의 변동성 등 제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 1.5.2 차액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차액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6 계약체결방식

- 1.6.1 계약체결은 개별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2 전력구매자중 전력시장에 회원으로 가입된 구역전기사업자는 계약기간내에 전력시장 거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계약당사자로서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단위

- 1.7.1 시간별 계약전력량은 kWh 단위로 산정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7.2 시간별 발전량은 kWh 단위로 산정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Wh까지 계산)
- 1.7.3 기준가격은 원/kWh 단위로 산정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7.4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7.5 차액정산금, 배출권거래비용 등의 단수처리는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 2 장 차액계약 산정원칙

제1절 계약전력량 산정원칙

2.1.1 정의

2.1.1.1 계약전력량은 차액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되는 전력량을 말하며, 발전원에 따라 시간별계약전력량 및 연간예상전력량으로 구분된다.

2.1.1.2 시간별계약전력량은 인센티브 및 위약금을 매 시간별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2.1.1.3 연간예상전력량은 기준가격 중 고정비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전력량을 말한다.

2.1.2 산정주기

2.1.2.1 발전기별 계약전력량은 제15조의 차액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2.1.3 산정원칙

2.1.3.1 시간별계약전력량은 계약기간 이전 실적자료, 전력예비율 전망, 송전계약, 제2절에 규정된 고장정지율, 중간예방정비정지율 및 기타 시간별계약전력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액계약고시 제4조2항에 따른 경우에는 발전기별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1.3.2 시간별계약전력량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1.3.3 연간예상전력량은 시간별계약전력량에 계약기간내에서 제2절에 규정된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을 제외한 운전가능한 시간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액계약고시 제4조2항에 따른 경우에는 발전기별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거나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2절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 산정원칙

2.2.1 정의

2.2.1.1 고장정지율은 연간 고장정지시간을 연간 고장정지시간과 연간 운전시간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2.1.1.1 고장정지시간은 불시정지, 비계획정비정지, 파급정지, 기동실패 등의 사유로 발전기가 정지한 시간을 말한다.

2.2.1.1.2 운전시간은 연간총시간에서 계획정지시간, 운영예비초과정지시간, 고장정지시간을 제외한 후의 시간을 말한다.

2.2.1.2 중간예방정비정지율은 연간 계획중간정비정지시간을 연간총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2.1.3 2.2.1.1 및 2.2.1.2의 정지에 대한 정의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에 따라 발표하는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의 분류에 따른다.

2.2.2 산정주기

2.2.2.1 고장정지율, 중간예방정비정지율 및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은 시간별계약전력량 및 연간예상계약전력량의 산정 시 적용되는 자료로, 산정주기는 제15조의 차액계약 기간에 따른다.

2.2.3 산정원칙

2.2.3.1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은 발전원별 및 설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과거 실적을 분석하여 산정한다.

2.2.3.2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하고 전력거래소에서 확정된 연간단위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을 적용한다.

2.2.3.3 고장정지율, 중간예방정비정지율 및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은 원자력 및 석탄발전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발전원의 경우

에도 필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기준가격 산정원칙

2.3.1 정의

2.3.1.1 기준가격은 차액계약고시 제12조(차액계약 기준가격)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데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2.3.1.2 기준가격은 고정비 기준가격, 연료비 기준가격 및 발전원 특성에 따른 기타비용 기준가격으로 구성된다.

2.3.2 산정주기

2.3.2.1 기준가격은 제1.5조의 차액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2.3.3 산정원칙

2.3.3.1 고정비 기준가격 요소 중 발전원 특성에 따라 고정비 기준가격에 포함하기 곤란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타비용 기준가격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절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원칙

2.4.1 정의

2.4.1.1 고정비는 발전기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원가(연료비 제외)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4.1.2 고정비 기준가격은 고정비를 연간예상전력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4.2 산정주기

2.4.2.1 고정비 기준가격은 제1.5조의 차액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2.4.3 산정 원칙

- 2.4.3.1 발전기별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 내 고정비(총 필요수입금액)를 연
간예상전력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고정비는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 투자보수, 운전유지비, 법인세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 2.4.3.2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 내 시간별 동일한 값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시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2.4.3.3 고정비 기준가격은 발전기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전소별 또
는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 2.4.3.4 고정비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발
전원에 대해서는 고정비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절 연료비 기준가격 산정 원칙

2.5.1 정의

- 2.5.1.1 연료비는 발전기가 출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원가를 말한다.
- 2.5.1.2 연료비 기준가격은 시간별계약전력량을 맞추기 위하여 소요되는 발전기의 연
료비를 시간별계약전력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5.2 산정주기

- 2.5.2.1 연료비 기준가격은 전력시장내 비용평가위원회의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
정주기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2.5.3 산정 원칙

- 2.5.3.1 시간별계약전력량을 산정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시간별계약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5.3.2 발전기별 연료비 기준가격은 월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발전기
별 연료소비 특성 및 열량단가와 필요시 기타 비용요소를 반영하여 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3.3 연료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전력시장에서 연료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에 대해서는 연료비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부생가스발전기의 차액계약

제1절 계약전력량 산정기준

- 3.1.1 시간별계약전력량은 차액계약고시 별표1에 따라 시간별 발전량 실적을 시간별계약전력량으로 같음하여 적용한다.
- 3.1.2 연간예상전력량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

- 3.2.1 부생가스발전기의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계획예방정지시간은 제3.5.2조항의 부생가스발전사업자의 1주기 표준예방정비시간을 적용한다.

제3절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기준

- 3.3.1 부생가스발전기의 고정비 기준가격은 제3.5.2조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4절 연료비 기준가격 산정기준

- 3.4.1 부생가스발전기의 연료비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절 기준가격 산정기준

- 3.5.1 부생가스발전기의 기준가격은 “자가발전대체가격”으로 하며, 자가발전대체가격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가발전대체가격 : 고정비 기준가격 + 변동비 기준가격 + 기타비용 기준가격

- 3.5.2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내의 제3.5.5조항에 규정된 기본요금단가의 합을 부생가스발전사업자의 1주기 표준예방정비시간(연간 24.8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외한 후의 연간운전가능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예비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기본요금단가의 합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가산비율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5.3 변동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내의 제3.5.5조항에 규정된 시간대별 전력량요금단가의 합을 연간총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3.5.4 기타비용 기준가격은 고정비 기준가격과 변동비 기준가격의 합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5.5 기본요금단가와 전력량요금단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전기요금표상의 산업용(을) 고압C 선택Ⅲ의 요금으로 한다.

3.5.6 계약기간내 전기요금 등 기준가격 산정요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가격을 재산정하며 요금표 변경시점부터 적용한다. 기준가격 재산정은 변경된 전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연간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절 차액정산금, 발전기 수입 및 배출권거래비용 산정기준

3.6.1 부생가스발전기 차액정산금은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후 시간별 발전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차액정산금 : (시장가격 - 기준가격) × 시간별 발전량

여기서,

시장가격 : 전력시장의 시간별 시장가격(SMP)

기준가격 : 차액계약서의 기준가격(SP)

3.6.2 부생가스발전기 수입은 전력시장의 총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즉,

발전기 수입 = 전력시장의 총정산금 - 차액정산금

여기서,

전력시장의 총정산금 : 시간별 시장가격(SMP) × 시간별 발전량

3.6.3 배출권거래비용은 배출계수, 발전량 및 배출권 할당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발전사업자별로 별도 정산한다.

제 4 장 보 칩

4.1 규정의 공고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규정개정안을 승인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에도 1개월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칩

본 규정은 201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